

보도자료

2011년 7월 21일(목) 배포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통신정책국 통신이용제도과 최성호 과장(750-2550)
통신이용제도과 이정순 사무관(750-2558) anidia1027@kcc.go.kr

방통위, 국내 오픈마켓 사업자와 개발자간 상생협력 가이드라인 마련 -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콘텐츠 시장의 상생협력 기반 조성”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스마트폰 기반의 오픈마켓 시장에서의 공정거래와 상생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관련 사업자, 개발자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된 『모바일 콘텐츠 오픈마켓 상생협력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스마트폰 보급 확산으로 콘텐츠 사업자(CP)와 소비자간 직거래 장터인 오픈마켓(앱스토어)을 통한 모바일 콘텐츠 이용이 활성화되고, CP 및 개발자의 주요 타겟 시장이 일반폰 기반의 무선포털에서 오픈마켓으로 이동하고 있다.

방통위는 애플 등 해외 사업자 중심의 오픈마켓 시장에서 국내 오픈마켓 사업자와 개발자간의 공정한 거래 기반과 상생협력 환경을 조성하여 개발자를 유인하고, 양질의 콘텐츠를 바탕으로 국내 오픈마켓의 활성화와 사업자개발자의 동반성장을 이끌어 내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은 국내 이통3사의 오픈마켓(SK T스토어, KT 올레마켓, LGU+ OZ 스토어)으로 향후 제조사 오픈마켓 등 국내 사업자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모바일 콘텐츠 오픈마켓 상생협력 가이드라인』은 ① 모바일 콘텐츠 대가, 오픈마켓 서비스 이용료 산정에 관한 사항과 ② 개발자 지원, 불공정 행위 방지 등 모바일 콘텐츠 발전 기반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 모바일 콘텐츠 대가 및 오픈마켓 서비스 이용료 산정에 관한 사항

- 모바일 콘텐츠의 대가(판매가격)는 개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함
- 오픈마켓 서비스 이용료는 사업자와 개발자간 공정한 계약에 의해 정해진 비율에 따라 투명하게 적용함
- 모바일 콘텐츠를 정기 구매하는 경우 사업자·개발자간 협의하여 오픈마켓 서비스 이용료를 조정할 수 있음
- 동반 해외진출 시 오픈마켓 사업자가 언어번역 등 현지화를 지원한 부분에 대해 개발자에게 이용료를 조정하여 비용을 부담하게 할 경우, 현지화에 필요한 비용을 초과하여 부담하지 못하도록 함

■ 모바일 콘텐츠 발전 기반에 관한 사항

- 오픈마켓 사업자는 콘텐츠 다운로드건수, 정산내역, 환불내역 등 정산관련 통계자료·정보를 개발자에게 제공
- 개발자 약관 변경 시 일반 내용의 경우 최소 7일 전, 개발자에게 불리한 약관의 변경일 경우 30일 전에 사전 고지 필요
- 정당한 사유 없이 앱 등록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수 없으며 앱 등록 거부 시 사유를 공개해야 함
- 개발자 또는 해당 개발자의 콘텐츠를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할 수 없음
※ 개발자 등록, 메뉴노출(추천앱 선정 등), 오픈마켓 서비스 이용료 정산율 등의 차별 금지
- 콘텐츠의 소프트웨어적인 결함(버그) 등이 발견될 경우, 개발자에게 기술적으로 지원하여 해당 콘텐츠를 수정 등록할 수 있도록 함
- 오픈마켓 사업자는 개발자 육성을 위해 필요한 교육, 기술지원, 공동협력사업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추진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내 오픈마켓 시장에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오픈마켓 사업자(이통사)와 개발자간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상생협력 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는 상호간의 약속으로서 의미가 있다.

또한, 최근 애플 등 글로벌 사업자의 오픈마켓 운영 행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오픈마켓 사업자(이통사)가 공정한 거래 기반을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측면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동 가이드라인은 애플 등 글로벌 사업자의 불공정한 오픈마켓 운영 행태에 대한 대응 시 적용 지침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이 국내 오픈마켓 시장의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이행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 『모바일 콘텐츠 오픈마켓 상생협력 가이드라인』 1부. 끝.

[붙임]

모바일콘텐츠 오픈마켓 상생협력 가이드라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가이드라인은 모바일콘텐츠 공급자(이하 “개발자”라 한다)와 모바일콘텐츠 오픈마켓사업자(이하 “오픈마켓사업자”라 한다)간의 모바일콘텐츠 오픈마켓서비스(이하 “오픈마켓서비스”라 한다) 이용 및 운영과 관련하여, 양자간의 권리, 의무 이행과 관련된 합리적인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고, 오픈마켓사업자와 개발자간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을 제시하여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본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오픈마켓”이라 함은 개발자가 자유롭게 모바일콘텐츠 및 애플리케이션(이하 “모바일콘텐츠 등”이라 한다)을 등록 판매하고, 이용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거래를 중개하는 공간을 말한다.
2. “오픈마켓사업자”란 PC 및 Mobile Device 등을 통해 개발자가 개발한 모바일콘텐츠 등이 거래될 수 있도록 중개를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개발자”란 모바일콘텐츠 등을 개발, 제작하여 오픈마켓사업자와의 정상적인 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를 오픈마켓사업자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서비스를 통해 일반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자를 뜻한다.
4. “모바일콘텐츠 대가”란 모바일콘텐츠 등을 구매 또는 이용하는 자가 지불하는 대가를 뜻한다.
5. “오픈마켓서비스 이용료”란 개발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등록, 관리, 과금대행 및 정산 등 오픈마켓서비스 이용의 대가로 오픈마켓사업자에게 지불하는 금액을 뜻한다.

제3조 (가이드라인 적용범위)

본 가이드라인은 개발자가 오픈마켓을 통해 모바일콘텐츠 등을 개발, 제작, 공급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제4조 (가이드라인의 효력)

- ① 본 가이드라인은 모바일콘텐츠 등을 공급하는 개발자와 오픈마켓사업자간 권리, 의무 이행과 관련된 합리적인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는 것으로 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공정한 거래관계로 당연히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 ② 오픈마켓사업자는 개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가이드라인 적용 이전보다 불리한 방향으로 계약 체결 또는 계약관계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제5조 (민관 협의체 구성 운영)

본 가이드라인의 준수여부 모니터링, 가이드라인의 개정, 모바일 콘텐츠 관련 사업자간 갈등예방 및 협력강화, 모바일 콘텐츠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불법·유해 콘텐츠 자율적 감시체계 마련 등을 위해 정부·오픈마켓사업자·개발자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며, 필요한 경우 담당기관을 선정 운영한다.

제2장 모바일콘텐츠 대가 및 오픈마켓서비스 이용료의 산정 기준

제6조 (모바일콘텐츠 대가 산정 원칙)

- ① 모바일콘텐츠 등의 대가는 개발자 및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오픈마켓에 모바일콘텐츠 등을 공급하는 자가 직접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오픈마켓서비스 이용료 산정 원칙)

- ① 오픈마켓서비스 이용료 산정은 오픈마켓사업자와 개발자 간 공정한 계약에 의해 정해진 룰에 따라 투명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② 오픈마켓서비스가 아닌 외부에서 결제가 완료된 모바일콘텐츠 등의 경우에는 서비스이용료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 ③ 정기적으로 구매가 이루어지는 모바일콘텐츠 등의 경우에는 오픈마켓사업자와 개발자간의 협의를 통해 이용료를 조정 할 수 있다.

제8조 (오픈마켓사업자 및 개발자의 의무)

- ① 오픈마켓사업자는 모바일콘텐츠 등이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며, 모바일콘텐츠 등의 운영과 관련된 설비는 개발자가 구축·운영한다.

- ② 개발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모바일콘텐츠 등의 하자에 따른 고객 불만 및 분쟁에 의한 보상책임은 원칙적으로 개발자에게 있다.
- ③ 오픈마켓사업자는 관련 법령상의 통신판매중개자로서의 책임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공동마케팅 및 해외진출)

- ① 오픈마켓사업자와 개발자는 각자의 필요에 따라 모바일콘텐츠 등과 관련된 마케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마케팅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오픈마켓사업자가 사전에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에 의해 개발자의 마케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모바일콘텐츠 등의 공동 마케팅을 실시한 경우에는 일시금 또는 오픈마켓서비스 이용료 조정 등의 방식으로 개발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③ 오픈마켓사업자가 사전에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에 의해 개발자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언어번역 등 현지화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한 경우에는 일시금 또는 오픈마켓서비스 이용료 조정 등의 방식으로 해당 개발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단, 오픈마켓사업자는 개발자가 직접 해외진출을 희망할 경우 이를 수용해야 하며, 임의로 동반 해외진출을 강요할 수 없다
- ④ 제2항,3항의 개발자 비용 부담시, 오픈마켓서비스 이용료 조정의 방식을 취할 경우에는 그 조정된 합계금액이 일시금 부담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모바일 콘텐츠 발전기반 확충

제10조 (오픈마켓서비스 이용료 정산의 투명성 제고)

- ① 오픈마켓사업자는 개별 모바일콘텐츠 등으로부터 발생한 오픈마켓서비스 이용료 정산 관련 정보를 해당 개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정보에는 해당 모바일콘텐츠 등과 관련된 대가 수익, 수익배분, 오픈마켓사업자·개발자간 정산액, 정산내역, 정산기준, 정산방법 환불내역 등 이용료 정산과 관련된 제반 정보와 개발자가 등록한 모바일콘텐츠 등에 대한 판매 통계자료(판매 및 다운로드 건수 등)가 포함된다.

- ③ 오픈마켓서비스 이용료 정산과 관련된 정보제공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의 정립,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제5조의 민관협의체를 통해 정할 수 있다.

제11조 (활성화 및 개발자 지원)

- ① 오픈마켓사업자는 오픈마켓서비스 관련 약관을 변경할 경우, 최소 7일 이내에 사전고지 하여야 한다. 단, 개발자에게 불리한 약관의 변경의 경우는 30일 이전에 개발자에게 사전고지 하여야 한다.
- ② 오픈마켓사업자는 오픈마켓서비스에 등록되어 유통되는 모바일콘텐츠 등에서 기술적, 소프트웨어적 오류, 버그, 등이 발견시에는 개발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기술적 지원을 받은 개발자는 일정기간 내에 해당 모바일콘텐츠 등을 수정 등록하여야 하며, 수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오픈마켓사업자와 협의하여 추가적인 조치를 진행하도록 한다.

제12조 (불공정 거래행위 방지)

- ① 오픈마켓사업자는 자신과 계약관계에 있는 개발자 및 해당 개발자의 모바일콘텐츠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대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의 차별적 대우에는 개발자 등록, 오픈마켓서비스 이용료 정산 기준, 정산율, 메뉴노출 등 실질적인 차별적 대우가 포함된다.
- ③ 오픈마켓사업자는 개발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추진하는 모바일콘텐츠 등에 대한 광고주 유치, 타 오픈마켓사업자 또는 여타 사업자 등에 대한 모바일콘텐츠 등의 제공과 같은 자율적인 마케팅 활동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제약하여서는 아니 되며, 해당 마케팅으로 인하여 발생한 대가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추가적인 오픈마켓서비스 이용료를 요구할 수 없다.
- ④ 오픈마켓사업자와 개발자는 자기 책임 하에 추진하는 모바일콘텐츠 등의 마케팅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용자 피해 등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할 수 없다.
- ⑤ 오픈마켓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모바일콘텐츠 등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지연해서는 안되며, 등록이 거부된 경우에는 개발자의 요청 시 등록거부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업자간 협력강화)

오픈마켓사업자는 오픈마켓 활성화의 중요한 주체인 개발자 육성을 위해 필요한 교육, 기술지원, 공동 협력사업 등 모바일콘텐츠 산업의 진흥을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을 한다.

제4장 부 칙

제1조(시행일)

- ① 본 가이드라인은 2011년 7월 이후에 체결되는 오픈마켓사업자와 개발자간 계약관계에 적용한다.

제2조 (가이드라인의 개정)

- ①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기간은 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오픈마켓의 급격한 변화, 예상치 못한 부작용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제5조의 민관협의체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수 있다.
- ③ 본 가이드라인에 대한 개정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동 가이드라인이 새로 개정된 것으로 본다.